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80호
----------	------

제안연월일 : 2021.6.16.(수)

제안자 : 최정숙 의원

1. 수정이유

-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신설하려는 제7조제4항제4호의 수의계약 사유 추가에 대하여 공정한 경쟁에 저해됨이 우려되어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7조제4항제4호 삭제

□ 수정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 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7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와의 생활폐기물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u>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지역 단위통합관리센터(논산시 공공처리시설)에 대행할 경우</u> ⑤ ~ ⑦ (생략)	제7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와의 생활폐기물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① ~ ⑨ (생략)

⑩ 쓰레기봉투를 이용해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는 50L 규격 봉투에는 10kg이하 등 폐기물 배출 밀도를 0.20kg/L 이하로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⑪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해 마련된 장소 또는 분리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 또는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청소차가 다니는 배출자 건물·집 앞 또는 도로변에 배출하되 쓰레기 배출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제9조의2(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소의식 함양,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단체·기업에게 홍보물품·기념품·포상금(재사용 및 재활용 물품 포함)을 배포·지급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쓰레기봉투를 이용해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는 50L 규격 봉투에는 10kg이하 등 폐기물 배출 밀도를 0.20kg/L 이하로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⑪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해 마련된 장소 또는 분리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 또는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청소차가 다니는 배출자 건물·집 앞 또는 도로변에 배출하되 쓰레기 배출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제9조의2(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소의식 함양,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단체·기업에게 홍보물품·기념품·포상금(재사용 및 재활용 물품 포함)을 배포·지급할 수 있다.

1. 폐현수막·폐아이스팩 등을 재활용·재사용하기 위한 사업에 시민·단체·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2. 재활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시민·단체·기업에 홍보물품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지역의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수집, 중고물품 교환 사업에 시민·단체·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4. 분리배출 및 환경보전 활성화를 위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참여마당에 참여하는 시민·단체·기업에게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2. (생략)
3. 쓰레기봉투(일반용, 음식물, 불연성폐기물 마대 포함)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의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

1. 폐현수막·폐아이스팩 등을 재활용·재사용하기 위한 사업에 시민·단체·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2. 재활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시민·단체·기업에 홍보물품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지역의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수집, 중고물품 교환 사업에 시민·단체·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4. 분리배출 및 환경보전 활성화를 위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참여마당에 참여하는 시민·단체·기업에게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

-----.

- 1.·2. (현행과 같음)
3. 쓰레기봉투(일반용, 음식물, 불연성폐기물 마대 포함)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의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